<u>o</u>	버귄	 O	ΛΗΤΙ	요구서
П	ΗЛ		VIIAI	立士入

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<u>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)</u>에 따라 예가람저축은행과 체결한 금융상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ı	1	ה	갠	젓	Ħ
П			_	$\overline{}$	_

이름	생년월일	
주소	연락처	

2 기재 사항

① 금융상품 명칭		
(필 수)		
② 상품 내용*		
③ 법 위반 사실		
(필 수)		
	□ 적합성 원칙(법 제17조 제3항)	□ 적정성 원칙(법 제18조 제2항)
④ 준수의무 위반 (선 택)	□ 설명의무(법 제19조 제1항·3항)	□ 불공정영업행위(법 제20조 제1항)
	□ 부당권유금지(법 제21조)	

* 상품 내용: 대출금액 / 대출일시 / 계약체결일 등 상품 명칭을 모를 경우 기재

③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·합리적인 근거

증빙 자료 및 참고 자료 (<mark>필</mark> 수)

- ♣ 본인은 상기와 같이 기재하여 제공한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.
- 1. 본인이 귀행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,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2. 귀행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"정당한 사유"가 있는 경우 귀하의 금융상품 계약의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20____년 ___월 ___일

금융상품 계약자 성명 : (서명/인) (법인의 경우)대리인 성명 : (서명/인)

친권자 / 후견인 성명 : (서명/인)

성명: (서명/인)